비파괴 검사원에서 발생한 NK/T-세포 림프종

직종 성별 남성 나이 37세 비파괴 검사원 직업관련성 높음

개요

근로자 OOO은 2007년 9월 29일부터 □사업장에서 비파괴검사원으로 작업을 수행하 였다. 2017년 4월 24일 대학교병원에서 림프절외 NK/T-세포림프종, 비강형태로 진단받 아 항암치료를 받고 치료 중이다. 근로자는 비파괴검사 작업을 하는 동안 전리방사선에 노 출되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여 2017년 10월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질병을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, 이에 근로복지공단에서는 2018년 5월 업무관련성 확인을 위한 역학 조사를 의뢰하였다.

작업환경

근로자가 취급한 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를 검토해 볼 때 상병과 관련 있는 유 해인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. 방사선 피폭선량 산출결과, 근로자가 4년 동안 노출된 방사선의 총 누적선량은 288.6~1028.6 mSv로, 근로자가 RT를 주로 수행했던 2007년 9 월부터 2011년까지의 방사선 피폭량은 계산에서 제외되었다는 점과 간헐적이기 하지만 두 꺼운(90~120T) 부재 RT 촬영 시 허가 없이 용량 및 에너지 준위가 더 높은 Co-60을 사 용했거나, 검사 부재 크기가 맞지 않아 RT룸 밖에서 작업을 했었다는 근로자의 진술을 고 려하였을 때 실제 피폭량은 더욱 컸을 것으로 추정된다. 국제방사선방어위원회(ICRP)에서 는 방사선 노출 허용량을 제시하였는데 1년간 전신에 허용되는 방사선 피폭선량은 최대 50 mSv, 눈에는 150 mSv, 갑상선에는 300 mSv까지 허용하고 있다. 국내 원자력법에서 는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유효선량한도가 연간 50 mSv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5년간 100 mSv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. 위 산출결과로 볼 때 근로자는 현장책임자로 근무하기 이 전인 2013년까지 매년 방사선 노출한도를 초과하는 방사선 피폭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 다.

해부학적 분류

- 림프조혈기계암

유해인자

- 물리적 요인

의학적 소견

근로자는 2016년부터 간헐적 허리통증이 있어왔으며, 2017년 2월 발열, 목통증, 오한, 기침 가래 및 체중 감소가 나타나 연고지 일반 의원 내원 후 편도염 진단하에 수액치료와 해열제를 처방받고 호전되었었다. 이후 발열 증상은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였으며 2017년 4월 대학병원으로 이송되어. 시행한 조직검사에서 림프절외 NK/T 세포 림프종 비강형으 로 진단받았다. 항암치료 6차 및 자가 말초혈액 (autologous PBSC (peripheral blood stem cell)) 이식 시행 후 추적 관찰 중이다. 근로자는 과거력, 가족력에서 특이사항이 없 었으며, 2012년 경미한 백혈구 수 감소 이외에 2007-2016년 건강진단에서 특이사항이 없었다.

고찰 및 결론

근로자는 2007년 9월 사업장에 입사하여 2017년까지 약 10년간 비파괴검사원으로 근 무하였다. 근로자의 질병과 관련된 작업환경요인으로는 Benzene, Ethylene oxide, 2,3,7,8-TCDD, X-radiation, Gamma radiation, Polychlorophenols 또는 그 염, Trichloroethylene, Methylene chloride 등이 제한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. 근로자의 방사선 피폭선량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288.6 mSv~1028.6 mSv로, 2007 년부터 2011년까지의 방사선 피폭을 고려하면 실제 노출은 이보다 훨씬 높았을 것이다. 근로자가 비록 EBV 감염자로 개인적 발병요인을 가지고 있으나 전리방사선 노출 역시 발 병에 충분히 기여했을 것으로 추정한다.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의 과학적 근 거가 상당하다고 판단한다. 끝.